

보도시점 2026. 9. 28.(월) 10:00 / 배포 2026. 9. 28.(월) 08:30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 부여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정상 신고인에게는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절차 개시 사실까지 통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전 의견청취절차는 본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인 또한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 정식 심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당 표시·광고 신고서에 타 기관 신고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직제 개정 및 상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관 정의 규정 등 조문과 신고서식을 정비하였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사건절차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피계림 (044-200-4121)
		담당자	사무관	박민정 (044-200-4123)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전심사) ① 조서관리관은 <u>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9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 할부거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 하도급법 제22조, 가맹사업법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u>상담, 공정거래 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u>),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5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심사) ① ----- <u>공정거래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표시광고법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 -----약관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 같은 법 제32조의2제3항, ----- -----, 하도급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 ----- ----- ----- -----, 상담을----- ----- ----- ----- ----- ----- ----- ----- ----- -----.</u>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사관은 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u>국장, 심판관리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u> . 다만, 조서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서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⑥ ----- ----- 국장(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제25조(심의절차의 개시 및 심사보고서의

현행	개정안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제32조(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 ⑤ (생략) <신설>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생략) ② 심사관은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u>할부거래법 제53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u> <신설> <신설> 5. <u>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 제2항</u> 6. <u>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4항</u> 7. <u>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 내지</u>	----- ----- --- (신고인등은 심사관에게 의견청취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심사관”은 신고인등을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그 밖의 의견청취절차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절차의 효율적 진행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u> 제61조(심사관의 전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할부거래법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1호 및 제12호</u> 5. <u>방문판매법 제66조제1항</u> 6. <u>전자상거래법 제45조제2항</u> 7. <u>하도급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u> 8. <u>가맹사업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u> 9. <u>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u>

현행	개정안		
<u>제2항</u> 8. (생략) ③ ~ ⑩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신고서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1.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지원행위) <u>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u>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u>5천만 원</u>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u><신 설></u>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8)</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u>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u> 10. (현행 8.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부당한 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신고서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1.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지원행위) <u>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u> ☞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u>1억 원</u>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table border="1"> <tr> <td>타기관 중복신고 여부</td><td>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있음’ 선택시 신고 기관명(), 신고일자(년 월 일), 처리상태(☐접수, ☐조사중, ☐완료, ☐기타)</td></tr> </table>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표시광고팀(☎044-200-4752)</u>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타기관 중복신고 여부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있음’ 선택시 신고 기관명(), 신고일자(년 월 일), 처리상태(☐ 접수, ☐ 조사중, ☐ 완료, ☐ 기타)
타기관 중복신고 여부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있음’ 선택시 신고 기관명(), 신고일자(년 월 일), 처리상태(☐ 접수, ☐ 조사중, ☐ 완료, ☐ 기타)		

현 행	개 정 안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2)</u>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하도급조사과(☎044-200-4590)</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가맹거래조사팀(☎044-200-4623)</u>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유통대리점조사과(☎044-200-4606)</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유통대리점조사과(☎044-200-4606)</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전자거래감시과(☎044-200-4476)</u>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하도급조사과(☎044-200-5011)</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가맹거래조사과(☎044-200-5109)</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유통거래조사과(☎044-200-5136)</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1670-0007) 또는 <u>대리점거래조사과(☎044-200-5154)</u>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